



## 산자부는 왜 세녹스를 단속하는가?

산업자원부

### 1. 석유제품의 특성과 세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를 주유할 때 연료의 색상이나 성분을 점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점검한다 해도 일반인이 그 연료가 진품인지 가짜인지, 성분이나 용량은 맞는지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석유는 다른 물건과 달리 일반인이 품질이나 상표나 계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석유가 다른 상품보다 거래에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석유제품가격의 구성은 정유공장 출하가격에 각종 세금과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유통단계의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원유가격이 배럴당 25\$정도 된다면 휘발유의 정유공장 출하가격은 리터당 360원 가량 됩니다만 여기에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지방세, 부가세

등이 합해 820원 가량 불고,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에게는 1330원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에 세금이 많이 붙는 것은 선진국(OECD회원국)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이 전국 평균으로 리터당 1,330원 정도라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덴마크, 핀란드는 대략 1,400원에서 1,500원 사이,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한국 등이 1,260원에서 1,360원정도, 일본이 1,054원,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형편 좋은 나라는 500~600원 선입니다.

### 2. 정부는 왜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나

원유를 정제하면 납사유분이 나오고, 이 납사유분을 가공하여 휘발유, 용제, 납사를 만듭니다. 납사는 전체

원유정제량의 20%내외가 나오는데, 석유화학산업의 원료가 됩니다. 석유화학원료가 되기 때문에 휘발유와 비슷하면서도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납사나 용제는 대략 휘발유와 비슷한 가격, 즉 리터당 360원 정도에 정유공장에서 석유화학공장으로 출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사나 용제, 여기서 가공되어 나온 다양한 석유화학제품은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몰래 빼돌려져 휘발유에 섞어 팔거나, 또는 휘발유의 사촌정도인 등유를 섞어 팔면 막대한 불법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킬로리터 짜리 유조차 한 대 분을 이렇게 속이면 1,600만원 정도의 불법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해방후 지금까지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대지만 결국은 탈세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근본적으로는 휘발유 세금이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워낙 커서 납사나 용제가 여기저기서 불법으로 흘러나올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석유는 연간 국내거래물량이 54조원, 내국 세 납부 18조원에 달하는 국내최대의 거래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의 유혹은 매우 크고 규모도 막대합니다.

### 3. 세금문제가 아니라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가

현재 국내에 나와있는 차량은 모두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제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동차연료로서 사용될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해서 일정한 성능, 안전, 환경을 위해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연료기준을 합격한 연료만이 자동차연료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생기준에 맞는 식품과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해 공장에서 출하시 또는 수입시에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유통중인 연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석유를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하는데, 쉽게 가짜휘발유라고 합니다.

가짜휘발유를 사용하면 유해식품이 우리 몸을 망치듯 자동차를 서서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가짜휘발유를 써보니 차가 잘만 나가더라는 말은 각성제나 마약을 먹으니 정신이 계속 맑아지더라는 사람과 같습니다. 환경에 위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운이 없으면 화재나 폭발등 안전사고의 희생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악(粗惡)가솔린”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알콜연료가 합법적으로 판매중인데, 일본의 세법상 정상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므로 정상 휘발유보다 약간 싼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악 가솔린의 사용으로 인해, 1996년 3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총 77건의 사고발생이 보고되고 있는데, 연료계통의 알루미늄제 부품의 부식(腐蝕)으로 연료가 새거나 연료계가 막히는 사고(52건)가 대부분입니다. 연료계통의 부식 등은 연료누출로 이어지고 곧 화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알콜연료는 화재발생시 차량내에 비친된 소화기로서는 소화효과도 없어서 일본정부(경제산업성 및 건설교통성)는 안전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대국민홍보문을 발표한 적(2002.4.25)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NOx)과 발암성이 강한 알데히드(Aldehyde)의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본 환경성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사석유제품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나 사용에 따른 사고가 분석되고 집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본보다 그 실태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 4. 정부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가

현행의 석유사업법 제26조와 석유사업법시행령 30조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여 조연제·첨가제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수 있는 것”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이의 생산·판매·저장운송·보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반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와함께 석유사업자(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의 경우에는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와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휘발유는 2000년에 147건, 2001년 161건, 2002년 216건이 적발되었고, 경유는 2000년 83건, 2001년 107건, 2002년 190건이 됩니다. 적발된 주유소는 대부분 5천만원의 과징금이나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 있으며 가중처벌도 받습니다.

#### 5. 세녹스의 제조·판매에 대한 각부처의 입장

2001년말 (주)프리플라이트라는 회사가 “알콜계 화학원료 55~65%인 자동차용연료인 세녹스를 새로이 개발했는데,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를 산업자원부에 질의(2001.12.24)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성분이 알콜류 62%, 톨루엔 약38%로 된 시험결과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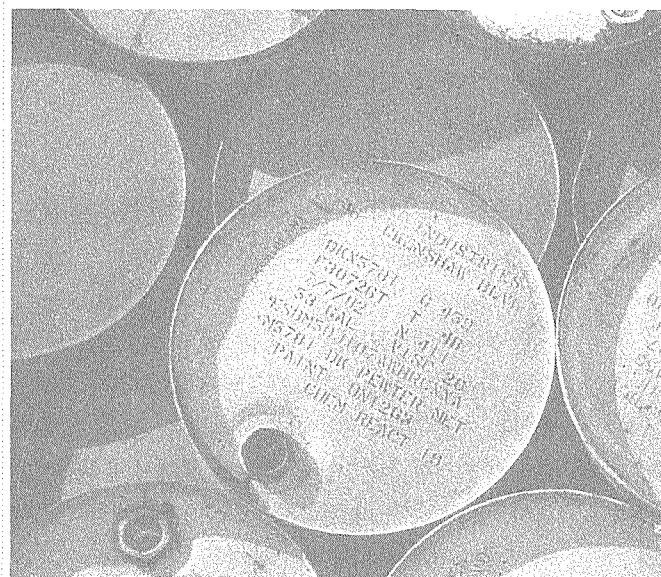
산자부는 “세녹스는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며, 만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성능시험과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로서 적합하다는 등 관련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제조·판매되는 경우는 유사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2002.1.29)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녹스는 어느곳에서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 및 성능시험이나 대기

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연료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세녹스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연료첨가제로서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2001.7.13)받은적이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그동안 “세녹스가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첨가제”라고 선전해 왔는데, 환경부는 이것이 “연료첨가제의 판매승인이나 허가가 아니고 단순한 시험성적서의 발급”이라고 밝힌바 있고, “환경부가 세녹스의 판매허가나 판매승인을 한 것”처럼 (주)프리플라이트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주)프리플라이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2003.3.13)하였습니다. 또 환경부는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며 첨가제라 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 소방법 등 개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첨가제를 40%까지 혼합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최대 1%로 제한하고, 판매용기도 1리터로 제한하는 방침을 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고쳐 금년 6월말 경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2003.3.18).

재경부는 세녹스와 유사한 성분의 LP-Power라는



가짜휘발유에 대해 특소세법상 교통세 과세대상임(2001.11.12)을 밝히고, 세녹스에도 일관성있게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주)프리플라이트에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해놓은 상태입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이 세금을 현재까지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마치 각 부처가 세녹스 단속에 대해 이견을 보이거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처럼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선전을 언론보도를 통해 해왔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녹스가 불법연료이며 단속대상이라는데 관계부처는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갖고있습니다.

## 6. 세녹스의 시판

세녹스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용연료첨가제로 적합”이라는 회신(2001.7.13)을 받았고, 산자부로부터는 “유사석유제품이고 불법제품”이라는 회신(2002.4.12)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녹스와 성분이 유사하고 논란이 되었던 “LP-Power가 재경부로부터 교통세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6월부터 전국의 13개 주유소에서 세녹스를 시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판매가격은 리터당 990원으로 휘발유(대략 1,330원선)보다 약 300원정도 싼 가격이었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를 제조장에서 대략 660원정도에 출하시켜 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을 330원정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판매주유소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략 정상 휘발유를 판매하면 주유소는 리터당 50원 내외를 판매마진으로 남기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산자부는 즉각 석유품질검사소로 하여금 전국의 판매주유소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도록 하였고, 결과는 예상대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즉 석유품질검사소는 “용제 약 60%, 톨루엔 등 약 30%, 메틸알콜이 약 10%정도 혼합된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자부는 단속방침을 정하고, 제조사인 (주)프리플라이트를 검찰에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2002.7.2)하고, 각 자체는 세녹스를 판매하는 전국 13개 주유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모두 고발했습니다. 세녹스를 판매하던 주유소 13곳은 과징금 5천만원 또는 3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결국 세녹스판매를 포기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교통세법에 따라 (주)프리플라이트에 세녹스 판매물량에 대해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주)프리플라이트는 매출액(리터당 660원)보다 더 많은 세금(리터당 820원)을 납부해야 하는 기형적인 손익구조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주)프리플라이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2002.10.31)하였습니다.

## 7. 세녹스측의 주장과 산자부의 설명

(주)프리플라이트는 자신이 정부와 거대 정유사로부

터 핍박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임을 호소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싼 가격과 높은 마진을 제시하여 수요자와 판매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높은 마진을 기대하고 선납금을 납부한 판매소, 일단 값싼 휘발유를 선호하는 수많은 소비자, 비싼 휘발유가격에 염증을 느낀 일반대중이 여기에 호응했고, 거물변호사들이 합류했습니다.

세녹스측의 주장요지는 “환경부가 허가한 첨가제를 같은 정부내의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으로 근거없이 단속한다”는 것과 “대체에너지로서 환경개선이 도움이 되는 신개념의 알콜연료를 산자부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단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주장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요지는 “환경부가 첨가제로 적합하다고 회신한 것은 인정하지만,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석유사업법 대상이 되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고 단속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햄이나 라면을 제조·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하나에 맞으니 다른 법은 상관없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산자부의 답변은 “세녹스의 성분이 용제와 톨루엔과 메틸알콜 등인데 모두 석유에서 추출되므로 대체에너지로 볼 수 없고, 신개념이나 신기술의 연료도 아니며 그냥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저급한 가짜휘발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8. 세녹스의 변칙판매 강행

정부의 단속으로 정상적인 주유소를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주)프리플라이트는 2002년 10월경부터 별도의 일반주유소와 외양이 비슷한 자체판매점을 개설하고 소방법상의 위험물저장취급소 허가를 소방서로부터 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위 세녹스 전문판매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와함께 카센타, 세

차장, 문방구, 잡화점이나 길거리, 골목 등을 가리지 않고 플라스틱통에 세녹스를 넣어 일반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주)프리플라이트가 석유사업법과 소방법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인데, 석유사업법에는 석유사업자(정유사, 석유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판매소 등)만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고있고, 석유사업자가 아닌자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으며, 사법절차에 따라 형사고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프리플라이트는 사법절차가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2심, 3심까지 시일을 최대한 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기간중에 세금을 가능한 체납하며, 대리점이나 판매소에게는 높은 마진을 제시하고 거액의 선납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세녹스를 최대한 많이 제조·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물변호사들이 돋고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주)프리플라이트에 대해 2002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세녹스 판매분에 대해 1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주)프리플라이트는 현재까지 체납상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녹스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납액은 매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9. 유사세녹스의 범람

(주)프리플라이트측이 사법절차의 지연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세금을 체납하며 제조와 판매를 하고있다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2, 제3의 세녹스를 자처하는 유사휘발유가 LP-Power, ING, 그린 오토파워 등의 이름으로, 또는 아무 이름도 없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중 어떤 유사제품은 별도의 공장이나 알려진 제조장이나 판매소도 없이 그냥 봉고차나 트럭 등에 위험물질인 가짜휘발유를 2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으로 수십통씩 싣고 다니며 길거리, 골목,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위험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짜휘발유는 알콜성분이 혼합되어 있어 정상의 휘발유보다 발화점이 낮은 관계로 휘발유보다 더 쉽게 인화가 됩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길거리에 세워둔 봉고차가 폭발하여 큰 화재가 발생(‘03.1.19)하여 전소되었는데, 이 봉고차에는 LP-Power라는 유사 세녹스가 수십통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또 충남 금산군에서는 세녹스 판매소가 전소(2003.1.6)된 바 있습니다. 산자부와 지자체는 세녹스의 판매회사인 (주)지오에너지와 세녹스, LP-Power, ING 등 유사 세녹스의 각 판매점 199곳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 10. 산자부의 용제조정명령과 경찰의 적극적 단속

단속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세녹스나 가짜휘발유 유통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따라 용제조정명령을 발동(2003.3.19)하였습니다. 즉 가짜휘발유의 주원료가 되는 용제(Solvent)가 (주)프리플라이트나 다른 가짜휘발유 제조자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차단하는 명령입니다. 조정명령을 어기면 행정처분과 벌칙이 따릅니다.

또한 세녹스와 가짜휘발유의 범람이 일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의 단속은 커다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11. 정부의 근본대책 - 석유사업법령의 개정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가 오게된 것은 유사석유제품을 단속하는 석유사업법이 너무 느슨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산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석유사업법은 대부분의 경우 석유사업자

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주)프리플라이트 같이 석유사업자가 아닌자에게도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단속하도록 하고, 처분받은자가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사법절차 등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둘째, 이번 세녹스의 사례에서 보듯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이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 산자부나 시도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제조시설의 철거·봉인 등을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 입니다.

셋째, 향후의 새로운 대체연료의 개발에 대해 보다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번의 세녹스와 같이 가짜휘발유가 대체에너지의 이름을 걸고 일반인을 혼혹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 또는 석유아닌 자동차연료의 일반적인 품질기준과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12. 만일 법원이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다”고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이렇게 될 가능성은 0.1%도 안된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가짜휘발유 제조범들이 석유사업법 제26조에 대해 위헌시비를 걸었고, 또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면 세녹스는 국내에서 누구나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존하는 수많은 유사세녹스나 유사LP-Power가 국내석유시장에 합법적인 자동차연료로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상당기간의 혼란을 거쳐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국내정유사들이 휘발유와 비슷한 가격인 리터당 360원대에서 생산하고 전국의 주유소망을 통해 판매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세녹스 제조사는 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 13. 정부의 예상대로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다”고 판결이 나면 그 후속조치는

산자부는 당장 (주)프리플라이트의 제조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입니다. 제조시설을 봉인·압류하고 철거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프리플라이트나 (주)지오에너지의 주요간부들은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해외로 잠적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산자부로서는 가짜휘발유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조치와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세녹스 판매소는 거액의 선납금을 제조사로부터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자부는 이를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 14. 향후 세금, 대체에너지, 솔렉스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세금문제가 유사석유제품의 근원이기 때문에 재정부와 협의하여 석유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모든 자동차연료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등 정품의 석유제품과 동등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실무적인 검증을 거쳐 명시적으로 개발과 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체에너지만은 면세 또는 자금지원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프리플라이트의 판매회사인 (주)지오에너지가 남아공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하겠다고 발표(2003.3.12)한 소위 “솔렉스”에 대해서도 주장의 진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휘발유와 동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15. 그럼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산자부는 어떤 입장인가

작년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가 되는데, 이를 2006년까지 3%, 2011년까지 5%로 늘리는 것이 산업

자원부의 목표입니다. 산자부는 1988년이후 현재까지 총 5,840억원을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보급확대에 지원하였는데, 작년에만 747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903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는 폐기물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소수력, 태양광, 풍력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에너지는 현시점에서 석유나 유연탄 등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래를 보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체에너지 육성정책은 (주)프리플라이트 같은 악덕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벅이를 주려는 정책이 아닙니다.

바이오디젤(BD-20)이라는 식물성 알콜연료가 현재 수도권과 전라북도의 시범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연료는 폐식용유나 쌀겨를 가공하여 만든 식물성 연료로서 바이오디젤 20%와 경유 80%를 혼합하여 경유차량에 경유대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석유사업법령과 산업자원부의 고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시범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다양한 국내차량에 바이오디젤을 사용할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공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1.11월에서 2003.10월간 2년의 기간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본격적인 전국시판을 허용할 것입니다.

즉 어떠한 대체에너지를 새로이 자동차연료로 개발이 되면 본격시판을 하기앞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식적이고 현재의 규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산자부는 (주)프리플라이트가 최초로 산자부에 세녹스에 관하여 질의를 해 올 때부터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연료만이 유사석유제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문서로 회신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주)프리플라이트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불법판매를 강행한 것입니다. ●